

성북구장애인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 2. 27. (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 2. 3.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555호)
- 나. 회부일자: 2026. 2. 11.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 2. 25.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곽정숙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사업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승인 및 동의)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보조)
- 위탁대상 현황
 - 시설명 : 성북구장애인주간이용시설
 - 위치 :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로 28(안암동), 지2층
 - 규모 : 약 133.84㎡(약 40.5평)

- 설치기준 : 건축물 연면적 최소 66m² 이상(거실, 조리실, 사무실 등)
- 인 력 : 5인 (센터장 1, 사회재활교사 3, 사무원 1)
- 위탁기간 : 위탁 협약일로부터 5년
- 위탁방법 : 공개 모집, 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의 후 선정
- 위탁사무의 범위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시설관리·운영
 - 장애인 낮 시간 동안 일상생활 돌봄지원
 - 맞춤형 프로그램 및 문화여가수업을 통한 개별적 기능향상 지원
 - 우리구 지역특색에 맞는 특화프로그램 및 기타 구가 요청하는 사항 등
- 위탁예산 : 200,000천원(구비100%, 인건비 및 운영비)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4조의2(승인 및 동의) 및 제5조(민간위탁사무 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제81조(비용보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한미경)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 예정인 성북구장애인주간이용시설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¹⁾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나. 주요내용

- 신규 설치 예정인 성북구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 체결일로부터 5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치사무의 경우 재위탁을 포함한다.

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 (시설 및 인력) 대상 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²⁾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³⁾ 등의 기준(건축물 연면적 최소 66㎡ 이상, 인력 3명 이상 등)에 적정
- (위탁기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⁴⁾에 근거하여 5년으로 설정
- (위탁사무) 위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17조⁵⁾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⁶⁾에 따른 시설 기능에 부합하는 것으로, 시설관리·운영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시간 동안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 지원 등을 하고
- (선정절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⁷⁾,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⁸⁾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므로 절차상 타당

라.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 예정에 있는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구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6)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6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투명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계획인바, 법적 절차 및 위탁의 필요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고]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현황

연번	지역	시설명	법인명	이용자 정원	이용자 현원	종사자 정원
1	종로구	비둘기주간보호시설	서울기독교사회복지회	15	13	5
2	종로구	리피엘주간보호시설	희상복지재단	10	6	3
3	중구	영락주간보호센터	영락사회복지재단	15	10	5
4	중구	남산골주간보호센터	서울농이인협회 중구지회	15	8	3
5	중구	여성사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사각장애인여성회	10	10	3
6	중구	사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서울특별시사각장애인연합회 중구지회	15	14	4
7	중구	파란미음주간보호센터	(사)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협회중구지부	15	15	5
8	중구	구립중림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동행연우회	12	12	5
9	용산구	용산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법인 청운보은동산	12	10	5
10	용산구	서울시 농아노인지원센터	사단법인 한국농이인협회	15	13	4
11	용산구	햇빛자리	서울기독교사회복지회	10	10	5
12	용산구	한빛장애인주간보호시설	한빛재단	10	10	5
13	성동구	성동주간보호센터	(재)성모성삼수도회	13	11	4
14	성동구	성모주간보호센터	(재)성모성삼수도회	12	13	6
15	성동구	함께주간보호센터	서울장애인부모연대	12	12	4
16	성동구	성동-래주간보호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나라	12	3	4
17	광진구	정립화관 주간보호시설	한국소아마비협회	15	13	3
18	광진구	희망의학교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유지재단	18	18	6
19	광진구	하나인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하나인의료사회재활협동조합	10	9	4
20	광진구	희망하우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유지재단	10	10	5
21	동대문구	이름모리주간보호센터	사)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10	10	4
22	중랑구	원광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사회복지법인 유린보은동산	12	11	5
23	강북구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12	12	5
24	강북구	한미음주간보호시설	서울시장애인부모회	12	12	5
25	강북구	할렐렐라의집 주간보호시설	서울기독교사회복지회	10	11	5
26	강북구	참사랑나눔주간보호센터	사단법인 나눔	12	12	4
27	강북구	참사랑나눔 주간보호센터2호	사단법인 나눔	12	12	4
28	강북구	이음주간교육센터	사단법인 희망이음커뮤니티	12	12	4
29	도봉구	자녀주간보호센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축복재단	15	12	6
30	도봉구	파라희망센터	개인	20	14	5
31	도봉구	주바라기 해피홈	개인	20	16	6
32	도봉구	주간보호시설 인강원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15	14	5
33	도봉구	도봉주간보호센터	서울시장애인부모회	10	10	5
34	도봉구	그린도봉주간보호센터	곰두리복지재단	12	11	5
35	노원구	가브리엘주간보호센터	한국장애인협회	10	11	4

36	노원구	노원장애인주간보호센터	청운보은동산	14	12	5
37	노원구	노원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한국시각장애노인복지협회	15	13	5
38	노원구	다운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법인 다운회	15	15	5
39	노원구	동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복지법인 동천학원	25	15	6
40	노원구	버데스다장애인주간보호센터	버데스다복지재단	15	15	4
41	노원구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한국봉사회	15	14	5
42	노원구	상계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법인 서울기독교사회복지회	16	14	5
43	노원구	삼감주간보호센터	(사)한국저체장애인협회	12	12	5
44	노원구	상민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법인 상민	12	12	5
45	노원구	오뚜기노성비인주간보호센터	한국노성비복지회	10	11	4
46	노원구	중계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한국봉사회	15	12	5
47	노원구	평화장애인주간활동센터	함께하는복지	15	11	5
48	노원구	하계장애인주간활동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16	10	4
49	노원구	하하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0	9	3
50	노원구	이름도모뎀터	엔젤스헤어본	18	13	7

- 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 주간이용시설현황(2024년 4월 기준), 공공데이터포털 추출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 2. 27. (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 2. 3.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557호)
- 나. 회부일자: 2026. 2. 11.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 2. 25.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곽정숙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2025년 제12기 성북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제안 안건 채택
- 관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시 축하 및 청소년 맞춤형 정보 전달을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존의 제6조제6호의 성년의 달을 삭제하고 축하카드 발송 등 지원을 구체화하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이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시 1만원의 범위 내 청소년 축하카드·기념품 등 지급” 으로 신설함 (안 제6조제7호)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예산조치 : 2026년도 본예산 반영(구비15,000천원)

○ 입법예고

- 기 간 : 2025. 12. 26. ~ 2026. 1. 15. (20일)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한미경)

가. 개요

- 본 개정안은 '2025년 제12기 성북구 어린이·청소년 의회'에서 제안한 안건을 채택한 것으로, 현행 조례 제6조(지원사업)제6호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구체화하여,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안 제6조(지원사업) 정비

- 기존 '청소년의 달 지원'을 '청소년의 달 행사 지원'으로 내용 구체화
- 기존 축하카드 발송 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불승인으로 카드발송이 불가하여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 '축하카드 발송 등 지원'을 삭제하고 개정안 제6조제7호에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이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시 1만원의 범위 내 청소년 축하카드·기념품 등 지급' 문구를 추가하여 지원 내용 구체화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청소년의 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청소년의 달, 성년의 달 행사 및 축하카드 발송 등 지원	6. 청소년의 달 행사 지원
<신설>	7.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이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시 1만원의 범위 내 청소년 축하카드·기념품 등 지급
7. (생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다. 종합의견

- '2025년 제12기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정책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시 1만원 범위 내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고,
- 행정안전부의 전산자료 불승인으로 인해 집행이 불가능했던 기존의 '축하카드 우편 발송'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 청소년들에게 체감 가능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며, 상위법령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 2. 27. (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 2. 3.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563호)
- 나. 회부일자: 2026. 2. 11.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 2. 25.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곽정숙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우리 구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적 표현과 창작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 기회 확대를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간인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 5. 31.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승인 및 동의) 제1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시설 현황
 - 시설명 :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 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 89-6
 - 규모 : 대지 257㎡, 연면적 477.80㎡ (지하1층/지상3층)
- 위탁기간 : 2026. 6. 1. ~ 2029. 5. 31.(3년)
- 위탁사무의 범위 :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 청소년 문화공간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 청소년의 자치·자율활동의 지원
 - 청소년의 자질 향상과 역량개발의 지원
 - 지역 청소년문화 활성화 지원
 - 학교 및 지역사회 자원(주민 등)과의 우선 연계
 - 청소년의 상담 및 지원
 - 기타 “성북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위탁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최초위탁 후 재계약 1회)로 재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 실시
- 수탁자격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 기존 위탁현황

시설명	시설현황	위탁기간	종사자 수	수탁기관	소요예산 ('26년 기준)
장위청소년 문화누림센터	- 위치 : 장월로 89-6 - 규모 : 477.80㎡ (지하1층/지상3층)	2023.6.1. ~ 2026.5.31.	5명	(사)한국청소년 한마음연맹 (센터장 : 김은희)	437,263(구비)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한미경)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5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법인(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한 것임
- 이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승인 및 동의)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기존 위탁현황〉

시설명	시설현황	위탁기간	종사자 수	수탁기관	소요예산 ('26년 기준)
장위청소년 문화누림센터	- 위치 : 성북구 장월로 89-6 - 규모 : 477.80㎡ (지하1층/지상3층)	최초위탁 2020.6.~2023.5. 재계약 2023.6.~2026.5.	5명	(사)한국청소년 한마음연맹 (선타장: 김은희)	437,263천원 (구비)

나. 주요내용

-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1항9)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10)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 시설로
- 기존 수탁기관의 재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청소년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 체결일로부터 3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 (법적 근거)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1)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제1항12)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 근거 있음
- (선정 절차)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13)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므로 절차상 타당
- (위탁 기간)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14)에 따라 3년 범위 적정

-
- 9)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11)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6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3년 범위에서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라.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구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투명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계획인바, 법적 절차 및 위탁의 필요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